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준거하여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및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④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개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강사, 외국인교원 및 강사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교원의 직위)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제4조(겸직금지) ① 우리대학교 교원은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 할 수 있다.

1.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
2.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교원이 사전에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학교에 출강, 수강하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우리대학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으로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교원은 계약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여야 한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임면과 승진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3장 임 면

제7조(임면권)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보고의무) 이사장이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일) 교원은 임명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용기간) 교원은 직위별로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① 2002년1월1일 현재 재직중인 전임교원은 직위별로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1. 교 수 정년까지

(단, 신규 채용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간,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는 10년간 임용할 수 있다)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4년

4. “삭제”

5. “삭제”

② 2002년1월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제11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제10조의 임용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의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

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관 제41조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당연면직)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의원면직)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14조(업적평가)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의 심사에 있어서는 교육·연구·봉사·산학 업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계약) 교원은 임용권자와 당해 교원과의 계약으로 임용된다.

제16조(임명장 교부) 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를 제외한 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발령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직위별 비율) 총장은 우리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원직위별 인원의 균형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 조정 비율은 교수는 법정정원의 7%, 부교수는 현원에서 40%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단 대학의 주요보직이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신규임용

제18조(신규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 학기 초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이하 “공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분야의 저명한 석학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특별초빙(이하 “특채”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특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공개초빙의 절차) ① 신규 총원규모와 채용분야에 대한 사항은 각 학부(과)별 교원총원 신청서(우리대학교 서식)를 작성하여 총원규모와 전공영역을 결정한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여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총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교외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심사결과는 교원신규채용서류심사표(우리대학교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공심사의 경우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시행한다.

- ⑤ 면접대상자는 전공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면접심사는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면접심사 조서(우리대학교 서식)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⑦ 채용심사 완료 시,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고득점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⑧ 인사위원회는 각 심사위원회별 심사의 타당성과 심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총장으로부터 임용동의 요청된 자에 대하여 임용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 ⑨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득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 ⑩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특정한 식별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한다.
- ⑪ 신규 채용된자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자격) ① 우리대학교 교원은 교육법 및 우리대학교 법인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② 특정분야 전공자 및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산업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구 및 교육경력년수 계산) ① 연구, 연구 및 산업체경력은 다음 [별표2]의 경력환산표에 의한다.

- ② 경력연수의 환산은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후부터 계산한다. 단, 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이 전공과 부합할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인정율의 80%를 인정한다.
- ③ 두 기관 이상에서 동시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중 한 기관에서의 경력년수만을 계산한다.
- ④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경력연수의 환산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상위직 임용제한) 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원, 대학 조교, 대학행정 관리 등의 경력만으로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에 임용되지 못한다.

제23조(퇴직교원의 임용)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우리대학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 퇴직 전의 직위에서 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퇴직 전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제24조(제출서류)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 |
|----------------------------|----------|
| 1. 자필이력서 (우리대학교 서식) | 2부 |
| 2. 사립학교 교원인사기록카드(우리대학교 서식) | 1부 |
| 3. 대학교원 연구업적심사조서(우리대학교 서식) | 3부 |
| 4. 연구업적물(200%이상) | 각 1부 |
| 5. 학력(졸업 및 수료)증명서 | 학위별 각 2부 |
| 6. 성적증명서 | 학위별 각 1부 |
| 7. 최종 학위증명서 사본 | 1부 |
| 8. 경력증명서 | 각 2부 |
| 9. 기본증명서 | 2부 |
| 10.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확인서 | 2부 |
| 11. 주민등록 등본 | 3부 |
| 12. 신원진술서(우리대학교 서식) | 5부 |
| 13.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 1부 |
| 14. 사진(3cm×4cm) | 3매 |

제25조(산학협력중점교원) ① 신규임용 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임용유예) ① 총장은 교원 신규임용예정자가 다른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고용계약 기간 중에 있거나 연구의 계속,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부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최근 4년 이내 200%이상의 연구업적물이 있어야 한다. (단, 제 20조 2항에 의거한 특별초빙 산업체트랙 지원자 및 산학협력 교원의 경우 연구업적물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조교수의 신규임용의 경우 1편(100%)의 연구업적이 부족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로 유예할 수 있으며, 서약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구업적이라 함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업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교육법 제77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장 승진임용

제28조(승진임용) ① 승진은 교원 업적평가의 결과를 심사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② 승진의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한다(단, 승진과 재임용시기가 같을 때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할 수 있다).

제29조(승진요건) ① 교원이 차상위직으로 승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년수
2. 교원 업적 평가 규정상의 최저 평점 기준

② 제1항 제1호를 충족하기 위한 교원의 승진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6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3. “삭제”

③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은 필히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보직이나 기여도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승진소요년수 산정) ① 최초의 승진소요년수는 우리대학교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기간은 승진소요년수의 50%만 가산한다.
- ④ 제26조 제2항에 의해 연구업적이 유예된 자는 유예기간을 승진소요년수에서 제외한다.
- ⑤ 제2항, 제3항에 의해 승진소요년수에 제외되는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2012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전임강사 근무경력도 승진소요년수에 포함한다.

제31조(승진임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정직 18월
 - 나. 감봉 12월
 - 다. 견책경고 6월

3.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승진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재 가산한다.

제32조(승진임용 절차) 전임교원의 승진은 다음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총장은 제28조 및 제29조의 기준에 의거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총장은 승진대상 교원의 업적평가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진을 심의케 한다.
3. 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그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4. 총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승진 임용을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제6장 재 임 용

제33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결과 및 학교의 장기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③ “삭제”

제34조(재임용기간의 계산) ①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 28일, 8월 31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②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의 파견 또는 출장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임용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

제35조(재임용기간) 신규임용의 임용기간과 동일하다.

제36조(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관계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

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⑤ “삭제”

제37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당연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단, 기간제 임용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에 따라 1년간 조건부 임용을 할 수 있다 - 경고대상)

제39조(조건부 임용처리) 제38조 제2항의 조건부 임용자는 1년 후 재임용시 조건부 임용사항을 참고하고, 이를 재심하여 결정한다.

제40조(의원면직)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7장 승급 및 보수

제41조(승급시기) 교원의 승급 시기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로 한다.

제42조(승급기간) ① 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한 자로서 근무평점 및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이를 행한다.

1. 기본호봉 : 7호봉~33호봉
2. 가 호봉 : 33-1호봉~33-10호봉

②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임용요건) 신규임용의 임용기간과 동일하다.

제44조(호봉획정) ① 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교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제45조(봉급경력년수 환산) ① 교원의 호봉 산정기준은 학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만, 군 경력은 예외로 한다.

② 호봉획정을 위한 봉급 경력년수의 환산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승급제한)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다만 취학이나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때는 예외로 한다.
2. 제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7조(승급기간산정) 징계처분에 의한 제한기간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복무,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48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49조(복무)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제50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휴직)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41조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2조(포상) 교원에 대한 포상은 교직원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징계) 교원의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54조(인사기록) 총장은 교원의 경력 및 근무사항, 기타의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임교원 임용자격

| 구분 | 초빙분야 | 임용자격 |
|-----------------------|------|---|
| 교수 | 공개초빙 |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이 14년 이상인자 |
| | 특별초빙 | 교육·연구·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인자 |
| 부교수 | 공개초빙 |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인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이 9년 이상인자 |
| | 특별초빙 | 교육·연구·산업체 경력 15년 이상인자 |
| 조교수 | 공개초빙 |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자 |
| | 특별초빙 | 교육·연구·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자 |
| 조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 -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의 관련 산업체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별표 2】

교육·연구·산업체경력 환산표

| 구분 | 환산인정률(%) | 경력 |
|----------|----------------------------|---|
| 교육 경력 | 100 | 1. 학력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100 | 2.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또는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
| | 100 | 3.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
| | 60 | 4.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30-70 | 5.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및 외래교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70%를 넘지 못한다 |
| | 60 | 6. 중고등학교 교원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에 부합하는 경우 |
| | 50 | 7. 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
| | 50 |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운동부 포함) 및 대학의 경기지도자 |
| 연구 경력 | 100 | 1.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단, 석·박사과정의 경우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 70 | 2.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단,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 2년 | 3.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
| | 2년×0.7 | 4.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단,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 | 박사 : 3년×0.7 석사 : 2년×0.7 | 5. 전공과 관련된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한 경우 |
| | 100 | 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포함)를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경력 |
| | 70 | 7. 연구교수나 연구원(박사후과정연구원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 | 50 | 8. 연구조교로 근무한 경력 |
| | 100 | 9. 대학교원 자격기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고시 제2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70 | 10. 대학교원 자격기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고시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
| | 70 | 11. 민간산업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

| 구분 | 환산인정률(%) | 경력 |
|-------------|----------|---|
| 산업체 등 근무 경력 | 100 | 1.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해당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 100 | 2.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 100 |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 | 100 | 4.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70 | 5. 공과계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 | 100 | 6.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
| | 70 | 7.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건축사의 개업기간 |
| | 70 |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
| | 70 | 9. 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원 개업기간 |
| | 70 | 10.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사로서 근무한 경력 |
| | 100 | 11.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

【서식 1】

연구실적조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구 분 | 제 목 | 내 용 요 지 | | 발표년월일 | 발표기간 및 출판사 |
|---|---------|---------|-----|-------|------------|
| 저 서 | | | | | |
| 논 문 | | | | | |
| 기 타 | | | | | |
| 심사위원 | 소 속 학 교 | 직 위 | 성 명 |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경운대학교 총장 | | | | | |
| ※ 연구실적보고서를 첨부할 것. | | | | | |

【서식 2】

연구실적 심사보고서

| 심사대상 소속 직·성명 | 학과 | 평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 | | | | | | | |
| 논문제목 | | | | | | | |
| 심사 소 견 | | | | | | | |

20 년 월 일

연구실적심사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심사위원 개별 작성할 것)

경 운 대 학 교

경 고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는 우리대학교의 교원으로서 기본적 자질, 학문 연구 능력, 강의능력, 학생지도 능력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도 및 근무상황 등에 관하여 평정한 바 재임용 충족조건에 상당히 미달되어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경 운 대 학 교 총장

경 고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는 우리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재임용기간 중에 연구실적물 등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간 연구실적물이 전무하여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내·외 학술활동, 학교발전과 학생지도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1년의 유예기간 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경 운 대 학 교 총장

【서식 3】

재임용 심의 신청에 관한 안내

학부

_____ 귀하

201 년 월 일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므로 재임용을 원하실 경우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류제출기간 : 201 년 월 일() 오후 5시까지
2. 제출처 : 법인사무국 (☎ 479-1121)
3. 제출서류
 - ① 재임용심의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연구실적목록(소정양식, 부속서류포함) 1부.
 - ③ 개인별 교원업적평가 결과 사본1부. 끝.

201 년 월 일

학교법인 승선학원 이사장

